

# 日本のオンライン 책임제한과 발신자정보공개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존재해야 법 적용

…발신자 정보 표시의 경우 권리침해 소지는 항존

글 / 최경진 연구원 (성균관대 비교법연구소)



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신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이에 따른 신종 범죄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그 발달 속도와 변화 매우 빨라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본 또한 정보통신과 관련한 새로운 법 개정 움직임 활발하다. 이에 일본의 온라인에서의 책임제한과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여 수록 한다.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 참고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편집자 주 -

## I 착한 사마리아인의 망변에 귀를 기울이며

선량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과 오랜 적대관계에 있었음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구해주었던 것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경(누가복음 제10장) 속 이야기가 근대에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특정 상황에서 책임을 분배시켜주는 실정법 규정으로 구현되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the Good Samaritan Clause)' 이란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보았을 때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 즉,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더라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주지 않은 사람을 도덕적으로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취지에서 실정법에 도입된 규정들을 말한다. 이는 또한 사랑을 실현하라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하여 '사랑 조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은 세계 각 국에서 주로 형법에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 정보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상의 행위주체가 전달·매개한 정보를 둘러싼 제3자간 권리다툼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리로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조항이 인터넷을 규율하는 법규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96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이다.

즉,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정보와 같이 불량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선의로 행한 자발적 조치를 이유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반하는 주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법령을 근거로 제소당하거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1997년 11월 12일에 연방항소법원이 선고한 *Zeran v. AOL* 판결에서, 정보증개자는 '발행자'나 '배포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Zeran v. American Online, Inc.*, 129 F.3d 327).

그 후 저작권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을 규정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가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칵테일 사건(서울지방법원 1999.12.3. 선고, 98가합

111554판결)'을 중심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논의들은 일본 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온라인 상의 프로바이더(Provider)나 서버를 관리·운영하는 자와 같은 특정 전기통신역무 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11월 22일에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책임제한법')'이 성립되었다. 이하에서는 온라인책임제한법이 입법되기 전의 판례의 동향과 입법취지를 살펴본 후, 온라인책임제한법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다.

## II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성립배경

### 1. NIFTY-Serve 판결

1997년 5월 26일, 동경지방재판소(裁判長 園部秀穂)에서 내려진 NIFTY-Serve 판결(判例時報 1610 , 22頁)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는, PC통신업체인 NIFTY-Serve(NIFTY-Serve)의 운영자로부터 전자회의실(Forum)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시삽(SysOp)에 대하여 포럼에 올려진 발언의 내용을 상시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명예훼손성 발언이 없는지를 탐지하거나 모든 발언의 문제성을 검토할 작위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삽이 운영·관리하는 포럼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기록된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삽은 그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타인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판결은 NIFTY-Serve의 책임에 관하여 시삽과의 관계에서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며, NIFTY-Serve는 민법 제75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온라인상의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범

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침해책임으로부터 일정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보호하여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 2. 입법경과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가 결정한 e-Japan 중점계획(2001. 3. 29.)에서 전자상거래 등의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새로운 룰(rule)의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인터넷상의 정보유통에 관하여 웹페이지 등에 정보를 게재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프로바이더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책임을 명확하기 위하여 필요한 룰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의 적정화 및 원활화에 관한 법률안'을 2001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각의(閣議)에서 결정한 규제개혁추진3개년계획(2001. 3. 30.) 중 전자상거래룰과 새로운 환경정비로써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등의 책임룰에 관하여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법안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2001년 11월 22일에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特定電氣通信役務提供者의 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發信者情報の開示に關する法律)'이 성립되었고, 2001년 11월 30일에 공포되어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3. 입법취지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매개한 정보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먼저 권리침해자와 정보발신자 사이에서 당사자간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정보발신자가 해당정보의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발신자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매개한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거나 발신자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구제를 꾀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정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의 곤란 기타 자주적인 대응조치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민사사건에 있어

서 발신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구제가 곤란하게 될 경우에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자주적 대응을 촉구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제정된 온라인책임제한법 제1조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서 권리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바이더(Provider), 서버의 관리·운영자 등과 같은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정보를 발신하는 자와 해당 정보를 수신하는 자와의 사이에 일정한 책임범위를 설정하고, 정보수신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III 온라인책임제한법의 내용

### 1. 적용범위

온라인책임제한법은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설비의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해당 특정전기통신설비의 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자가 해당 정보를 수신 받는 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그 침해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책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게 적용되며, 간접적으로 발신자와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수신자에게 적용된다.

#### 1)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란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특정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특정전기통신설비란 불특정인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을 위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설비를 말한

다. 전기통신 및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 동일하다.

다만, 이 법이 적용되는 특정전기통신은 불특정인에 의하여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의 송신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며,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 즉,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더라도 방송과 같이 일방적인 정보의 제공은 제외되며(동법 제2조 제1호),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의 전송과 유사한 개념이다.

## 2) 발신자

온라인책임제한법에서 규율되는 발신자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설비의 기록매체(해당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송신되는 것에 한한다)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또는 해당 특정전기통신설비의 송신장치(해당 송신장치에 입력된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송신되는 것에 한한다)에 정보를 입력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 2.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명확화

온라인책임제한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매개·전달된 위법한 정보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침해사실의 인식과 관련된 요건과 침해제거를 위한 조치와 관련된 요건 등이 요구된다. 이상의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해당 서비스제공자는 위법정보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일반적 요건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특정전기통신설비 또는 송신장치에 정보가 입력된 후 해당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전달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야 한다. 특히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권리 침해에는 DMCA나 CDA와 같이 특정한 권리에 한정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프라이버시침해 기타 불법행위가 모두 해당된다.

### 2) 책임제한을 위한 요건

#### 침해정보의 송신방지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다만,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권리를 침해한 정보의 발신자인 경우에는 예외이다(동법 제3조 제1항).

구체적으로 권리침해사실의 인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와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을 알고 있을 경우에,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이다.

#### 침해정보의 송신방지조치를 강구한 경우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 해당 조치가 침해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내에서 행하여진 경우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에 의해 송신이 방지된 정보의 발신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동법 제3조 제2항).

즉,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와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침해정보, 침해되었다고 하는 권리 및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이유(이하 '침해정보 등')를 제시받고 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이하 '송신방지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침해정보의 발신자에 대해 해당 침해정보등을 제시하고 해당 송신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가의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해당 발신자가 해당 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여도 해당 발신자로부터 해당 송신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청이 없는

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효과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으로 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자의 인식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침해정보의 송신방지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위법성 존재 판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송신방지조치요청에 기하여 발신자의 의사를 요청하였으나 7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송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해진 해당 송신방지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온라인책임제한법이 규정하는 면책의 범위는 정신적인 손해이든 재산적인 손해이든 구분하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에 한정된다.

## 3. 발신자정보의 공개

온라인책임제한법은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침해된 당사자가 침해와 관련되는 발신자정보의 개시(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간 해결, 민·형사상 조치 또는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줌으로써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1) 청구요건

발신자정보의 개시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즉, 침해정보의 유통에 의해 해당 개시청구를 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분명할 때, 해당 발신자정보가 해당 개시청구를 하는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이다.

### 2) 대상정보

개시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신자정보는 해당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는 권리의 침해와 관련되는 발신자정보로서, 이름, 주소 기타 침해정보의 발신자의 특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다만, 구체적인 발신자정보의 범위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발신자 의견 청취 의무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해당 개시청구와 관련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여부에 대하여 해당 발신자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동법 제4조 제2항).

### 4) 발신자정보를 개시받은 자의 의무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은 자는, 해당 발신자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해당 발신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 5) 책임제한

온라인 상의 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의한 개시청구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개시청구를 한 사람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동법 제4조 제4항 본문).

다만,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개시청구와 관련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4조 제4항 단서). ☞

법률의 원문은 중의원(衆議院) 홈페이지(<http://www.shugiin.go.j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문 및 제목 등의 배열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에서 널리 이용되는 편제로 구성한 것이며, 이해를 돋기 위해서 필자가 가변역(假翻譯)한 것임을 밝힌다.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氣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發信者情報の開示に關する法律)

제정 : 2001. 11. 22. 법률 제137호 / 공포 : 2001. 11. 30.

### ● 제1조 (취지)

이 법률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서 권리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 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하는 권리에 대해 정하고 있다.

### ●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특정전기통신

불특정인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전기통신사업법(1984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전기통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송신(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2. 특정전기통신설비

특정전기통신용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말한다.

#### 3.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특정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4. 발신자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설비의 기록매체(해당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송신되는 것에 한한다)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또는 해당 특정전기통신설비의 송신장치(해당 송신장치에 입력된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송신되는 것에 한한다)에 정보를 입력한 자를 말한다.

### ● 제3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해당 특정전기통신용으로 제공되는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이하 이 항에서 「관계역무제공자」라 한다)는, 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권리를 침해한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때가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관계역무제공자가 해당 권리의 침해한 정보의 발신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해당 관계역무제공자가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 ② 해당 관계역무제공자가,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을 알고 있을 경우에,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경우에는, 해당 조치에 의해 송신이 방지된 정보의 발신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해당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이며,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①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②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는 정보(이하 「침해정보」라 한다), 침해되었다고 하는 권리 및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이유(이하 이 호에서 「침해정보등」이라 한다)를 제시받고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대해 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이하 이 호에서 「송신방지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해당 침해정보의 발신자에 대해 해당 침해정보등을 제시하고 해당 송신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가의 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 해당 발신자가 해당 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여도 해당 발신자로부터 해당 송신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청이 없는 때

#### ● 제4조 (발신자정보의 개시청구등)

1.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정전기통신용으로 제공되는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이하 「개시관계역무제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개시관계역무제공자가 보유하는 해당

권리의 침해와 관련되는 발신자정보(이름, 주소 기타 침해정보의 발신자의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시를 청구할 수가 있다.

① 침해정보의 유통에 의해 해당 개시청구를 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분명할 때

② 해당 발신자정보가 해당 개시청구를 하는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개시관계역무제공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개시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개시청구와 관련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여부에 대하여 해당 발신자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은 자는, 해당 발신자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해당 발신자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개시관계역무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시청구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개시청구를 한 사람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개시관계역무제공자가 해당 개시청구와 관련되는 침해정보의 발신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부칙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